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기석 의원 외 10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김기석 의원 외 10명
- 제안일 : 2020. 10. 20.
- 회부일 : 2020. 10. 20. (의안번호 : 20 - 156)

2. 제안이유

-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·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달리 정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
(안 제6조의2)
-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수정
(안 제10조제2항)

4. 관계법령
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·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달리 정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2조제5호에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
- 안 제6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.
- 안 제10조제2항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‘17.7.26. 일부개정, ‘18.3.22.시행)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대기환경 개선,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따라서,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부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·관리한다면 관내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.